

검토의견서

【사회적경제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을 삭제 함(안 제3조)
-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 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 하도록 함(안 제11조)

3. 검토의견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